

시행일:2019.03.28. 입력자:장다겸 확인자:원대희

가천인권센터규정(명칭변경 : 2019.03.28.)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한 가천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.(개정 2018.02.22., 2019.03.28)

제2조(명칭) 본 센터는 가천대학교 가천인권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칭함)라 한다.
(개정 2018.02.22., 2019.03.28)

제3조(소재) 센터는 가천대학교내에 둔다.

제4조(센터의 목적) 센터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상담, 구성원의 인권보장, 성문제의 예방과 처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(개정 2018.02.22., 2019.03.28)

제5조(기능) 센터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(개정 2018.02.22.)

1. 개인 및 집단 상담에 관한 일체의 사항
2. 각종 심리 및 인·적성 등의 제 검사에 관한 사항
3. 성문제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
4. 기타 학생 생활에 관련된 사항
5. (삭제 2018.02.22.)
6.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향상 및 인권문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(신설 2019.03.28.)

제 2 장 조직 및 운영

제6조(부서)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.(개정 2018.02.22.)

1. 종합상담실
2. 양성평등상담실

3-5-5~2 제3편 행 정

3. 인권상담실(신설 2019.03.28.)

②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18.02.22.)

1. 종합상담실은 개인 및 집단상담, 각종 심리 및 인·적성검사 등 상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.
2. 양성평등상담실에서는 성문제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장한다. 또한 이를 위하여“성문제의 예방과 처리 등에 관한 규정”을 따로 정하며 그 규정에 양성평등상담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.
3. 인권상담실은 가천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.(신설 2019.03.28.)

제7조(구성원) ①본 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18.02.22.)

②종합상담실과 양성평등상담실, 인권상담실에 각각 실장 1인씩을 둘 수 있으며, 교직원 중에서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18.02.22., 2019.02.21.,2019.03.28)

③본 상담실에 카운슬러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,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실장이 위촉한다.

④본 상담실에 업무상 필요한 직원 약간인을 둔다.

제8조(업무) ①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및 운영을 관장하고 교무처장을 보좌한다.(개정 2018.02.22., 2019.02.21.)

②각 실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소관업무를 처리한다.(개정 2018.02.22.)

③(삭제 2018.02.22.)

제8조의2(상담 추진체계) 상담 업무는 일반상담, 위기상담으로 분류한다.(신설 2018.08.23.)

①일반상담(저위험군) : 대학생활적응,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, 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항(신설 2018.08.23.)

1. 상담접수, 사례배정, 상담예약 관리
2. 심리검사에 대한 데이터 분석
3. 개인상담 사례 분석 및 진행
4.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
5. 상담(심리)특강 콘텐츠 개발 및 강사 섭외

②위기상담(고위험군) : 자살 및 위기 관련 상담 및 대응, 자살예방과 위기사

레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(신설 2018.08.23.)

1. 위기사례에 대한 위기등급 변별
2. 위기예방 사전검사 및 상담지원
3. 위기상담 사례별 대응 및 보호자 면담 진행
4. 병원 약물치료 검토 및 연계

제8조의3(환류체계 관리) 센터장은 학생의 상담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업성과 관리의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.(신설 2018.08.23.)

1. 실태조사, 설문조사, 내방상담평가 등을 통한 사전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항목별, 영역별 분석평가
2. 분석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
3. 프로그램 성과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한 결과보고서 작성
4. 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후 사업 개선 계획에 반영 등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9조(설치)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칭함)를 둘 수 있다.(개정 2018.02.22.)

제10조(조직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(개정 2018.02.22.)

②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(개정 2018.02.22.)

③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교무처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18.02.22.,2019.02.21)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18.02.22.)

1.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집행
2. 업무 및 결산 보고
3. (삭제 2018.02.22.)
4. (삭제 2018.02.22.)
5. 기타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(개정 2018.02.22.)

제 4 장 재 정

제11조(경비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연구비는 교비지원금, 출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(개정 2018.02.22.)

제12조(회계년도) 센터의 회계년도는 가천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.(개정

3-5-5~4 제3편 행 정

2018.02.22.)

제13조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(개정 2018.02.22.)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